

「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 
동의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은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갖춘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신기술의 사업화 및 기업 당면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임.
-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술혁신형 소·부·장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및 전문가 네트워킹이 요구되는 바,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사 업 명 :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1) 추진근거

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나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다)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8조, 제9조

라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2) 필요성 : 기술혁신 기업 선정, 사업 관리, 컨설팅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와 각종 기업지원사업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

다. 위탁 사무 내용 :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업무 전반

1) 사업세부계획 수립,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, 대상기업 선정

2) 선정평가, 기업 간담회 실시, 지원금 지급 등 사업추진 전반

3) 기업 만족도 및 사업성과 조사, 후속 지원 연계 등 사후관리

라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마. 위탁기간 : 2026. 2월 ~ 12월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900백만원(시비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간접비	사업비	비고
900	180	90	630	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(251225)

아.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자. 부서의견 :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인력 등 자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

#### 4. 참고사항

##### 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-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조례」 제8조, 제9조
-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##### ○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-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
: 적정(2025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)
-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  
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 1. 1. 시행)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동의안은

-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면과제 해결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각종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과 기업 맞춤형 과제 해결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수행 실적을 보유한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기존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없이 관례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투명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, 성과평가 및 감사 등을 통해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·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